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김기창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8년 11월 21일

나.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2일

3. 제안이유

충북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두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실무협의회, 관계기관 협조 요청,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실무협의회, 관계기관 협조 요청,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18. 10. 23.~'18. 10. 29.)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